

부산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714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7145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소107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변론종결 2024. 8. 30.

판결선고 2024. 9. 2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소1070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13,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3,0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3488호1)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였고(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등이 망인을 수계하였다), 위 사건에서 망인의 진료비(피고의 채권)는 4,096,640원으로 인정되었다.

○ 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9나51291호 사건에서 망인의 진료비는 3,930,270원으로 변경되어 인정되었다. 이는 망인의 본인부담금 총액 7,567,030원에서 납부가 된 271,900원과 금정구청의 긴급의료비 3,364,86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2020다230796)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재심 청구(부산지방법원 2020재나112, 대법원 2022다212310) 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망인의 비급여 및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은 1,904,860원이다.
- 피고는 금정구청으로부터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3,364,86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중복으로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바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으로 받은 판결 승소금 3,930,27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513,279원(= 망인의 상속인 D이 지급한 936,002원 + 망인의 상속인 E이 지급한 937,007원 + 금정구청 지급금 3,364,860원 + 판결금 3,930,270원 + 원고가 지급한 250,000원 - 망인의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1,904,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망인의 비급여 및 급여 본인부담금이 1,904,860원이 아닌 7,567,030원임은 앞서 보았다(원고는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위와 같이 주장하나,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
-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진료비 채권액 3,930,27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정구청의 긴급의료비 3,364,86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D과 E로부터 동인들이 부담하는 판결 원리금과 추정 소송비용을 합하여 각 936,002원, 937,00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판결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 결국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정성호, 판사 박우종

1) 위 사건에서 제기된 반소(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이다)는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이하 반소 사건번호는 따로 적지 않는다.